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12.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1월 2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100회 제2차정례회 제4차위원회 (2003. 12. 8)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가. 제안이유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마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대상은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매년 12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 접수 개시일 20일전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규정함.
 - 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2인,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사회단체관련 전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
 -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함
- 심의위원 중에 실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대상인지 여부
 - 사회단체의 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전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교부하거나 사업연도 개시전에 다음회계연도 1개월분의 사업비를 보조사업자에게 긴급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및 용도외 등의 경비로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로 개선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와 사업에 관한 규정과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의 제정형식은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칙을 5장 28조로 구분하여 제정하였음.

<주요내용>

- 안 제1장 총칙에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서는 지원대상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과 제외규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2인과 사회단체관련 전문가 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장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방법 및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재재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매년 12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4년도에 한해서는 안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기간을 2004년 1월 31까지 신청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 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로 개선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의 특성 및 사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향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동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며, 동 보조금 상한액은 본 회기 중에 상정되어 있는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6억 6백만원에 대한 배분은?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체별로 상한액을 정함.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국장이상 7명, 구의원2명, 사회단체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있음.
- 질의요지(김광섭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약100% 증액 편성한 근거는?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행자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통임.
- 질의요지(김광섭 위원) : 지원금을 받을 단체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 하는가?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단체수가 늘어 난다고 봅니다.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방위협의회 지원은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가?
- 답변요지(김재형 기획예산과장) : 예산 지원방법이 다름.
- 질의요지(김효철 위원) :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만 하지 않으면 어떤 단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단체에서 할 경우에만 지원.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마포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전부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대책은?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 맞는지 엄격히 심사가 될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요지 :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 12. 8 오윤수 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원안에는 2인으로 되어 있는 마포구의회 의원을 3인으로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9조제3항제1호 중 "구의회 의원 2인"을 "구의회 의원 3인"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3. 12. 8.
제 안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위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원안에는 2인으로 되어
있는 마포구의회 의원을 3인으로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9조제3항제1호 중 "구의회 의원 2인"을 "구의회 의원 3인"
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원안	제9조(구성 등) ①~③(생략) 1. 구의회 의원 <u>2인</u>	증안	제9조(구성 등) ①~③(원안과 같음) 1. ----- <u>3인</u>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마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보조금 지원대상은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1)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매년 12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 접수개시일 20일전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9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규정함.
 - (2) 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2인,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사회단체관련 전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
 - (3)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함.
- 마. 심의위원 중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1)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 (2)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대상인지 여부
 - (3) 사회단체의 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사.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전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아.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교부하거나 사업연도 개시전에 다음회계연도 1개월 분의 사업비를 보조사업자에게 긴급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및 용도외 등의 경비로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25조)

3. 제정 근거

- 가. 지방재정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4조
- 나. 지방재정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24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2004년도 예산에 6억 6백만원 반영함.(마포구 상한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84쪽 자치단체별 상한액 - 행정자치부)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3.10.25.~11.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11.2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한다)의 견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보조대상은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 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4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매년 12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 접수개시 20일전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구의 주요 시책 수행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관련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아 수시로 교부 할 수 있다.

④사회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회단체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사회단체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 담하는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사회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 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사업 등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사회단체별로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부
 2.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4.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 중에 심의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인

2.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사회단체관련 전문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진흥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교 부

제13조(교부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통보 받은 사회단체의 장(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전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③제2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제6조제1항에서 결정된 사항과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방법)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교부하거나 사업연도 개시전에 다음회계연도 1개월분의 사업비를 보조사업자에게 긴급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교부지령)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지령서를 보조사업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부지령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교부지령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 및 구청장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교부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5장 보 쳐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단체가 사업의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25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거나 교부목적 및 용도 외로 경비를 사용한 때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5.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제26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4년도 보조금 신청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